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영희	711006-****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	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개인용(Basic)				
보장성	102-81-32	2***	C20140642	2432	711006-*****	권영희	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 (Hi1				
보장성	102-81-32	2***	L01504016	878	711006-*****	권영희	219,100
	메리츠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	알파Plus보장보험1108				
보장성	116-81-03	3***	6Q94754	1 7	700612-*****	VERJAT OLIVIER	372,0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알파Plus보장보	브험1108			
보장성	116-81-03	3***	6Q9158892		711006-*****	권영희	360,000
	메리츠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	알파Plus보장보험1108				
보장성	116-81-03	3***	6Q948266		080421-*****	베르자라희	240,0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영희	711006-****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	종피보험자1		자2	종피보험	자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알파Plus보장브	보험1108			
보장성	116-81-03***		6Q9482	65	080421-*****	베르자설희	240,000
	현대해상화재보	.험 (주)	하이카 다이렉!	트 개인용			
보장성	102-81-32*** M2015783389800000 711006-****** 권영희		M2015783389800000		824,53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하이카 다이렉트 개인용				
보장성	102-81-32	2***	M2015783437	7600000	711006-*****	권영희	488,16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하이카다이렉트운전자보험				
보장성	102-81-32***		S20140051057		711006-*****	권영희	188,280
	700612-*****	VERJAT OLIVIER					
	인별합계금액		2,93		2,932,07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영희	711006-*****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8-15-70*	밝****	일반	5,200
8-13-72*	人 ├*****	일반	5,300
4-08-74*	신****	일반	16,000
4-91-23*	연****	일반	31,000
4-90-90*	연*****	일반	26,200
8-91-81*	연****	일반	4,200
8-91-39*	오******	일반	4,200
7-82-16*	<u>o</u> *********	일반	250,000
4-96-06*	0 ***	일반	20,500
4-90-15*	인****	일반	122,700
6-77-00*	행****	일반	28,1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13,4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13,4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베르자설희	08042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82-01*	고*****	일반	30,340
4-90-73*	김*****	일반	30,000
4-15-46*	동****	일반	25,400
5-91-28*	반*****	일반	9,800
8-15-70*	片****	일반	5,900
7-98-06*	서****	일반	5,300
4-09-21*	세***	일반	4,400
4-90-92*	센*****	일반	28,700
7-57-80*	신*****	일반	7,130
4-90-90*	연*****	일반	16,000
8-91-39*	<u>Q</u> ******	일반	7,200
4-15-48*	지 ******	일반	6,000
1-01-84*	크*****	일반	13,200
6-77-00*	행****	일반	18,900
4-82-00*	(*********	일반	1,129,11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337,38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베르자설희	08042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337,38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베르자라희	08042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82-01*	고*****	일반	30,340
4-90-73*	김*****	일반	30,000
8-19-26*	⊑****	일반	5,000
5-91-28*	반*****	일반	8,600
4-09-59*	반*****	일반	2,100
8-15-70*	낡****	일반	2,600
8-13-42*	밝**** *	일반	2,800
3-10-84*	바****	일반	2,600
7-57-80*	신*****	일반	7,130
4-90-90*	연*****	일반	20,600
8-91-39*	오******	일반	4,200
4-15-48*	지 ******	일반	4,200
6-77-00*	행****	일반	13,400
4-82-00*	(*********	일반	1,081,49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215,06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베르자라희	08042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인별합계금액			1,215,06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베르자설희	08042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초등학교	***원초등학교	**4-83-00***	807,550
인별합계금액			807,550

- 1.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포함)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 3. 공제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베르자라희	08042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초등학교	***원초등학교	**4-83-00***	807,550
인별합계금액			807,550

- 1.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포함)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 3. 공제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전통시장

대중교통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영희		711006-*****	
■ 2013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44,211,941		
전통시장	189,720	인별합계금액	44,590,911
대중교통	189,250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41.009.090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0

326,800

인별합계금액

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일반	28,936,223	28,936,223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119,050	119,050
일반	20,170,316	20,170,316
전통시장	37,500	37,500
대중교통	3,000	3,000
일반	49,106,539	49,106,539
전통시장	37,500	37,500
대중교통	122,050	122,050
계금액	49,266,089	49,266,089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28,936,223 전통시장 0 대중교통 119,050 일반 20,170,316 전통시장 37,500 대중교통 3,000 일반 49,106,539 전통시장 37,500 대중교통 122,05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60118-10438683

41,335,890



NTS 🛠 국세청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영희	711006-****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268,390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15,000
214-81-37***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4,05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0
211-87-2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일반	39,00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36,041,342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37,50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0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2,645,027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0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118,00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97,78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영희	711006-*****

■ 2013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91,520		
전통시장	0	인별합계금액	91,520
대중교통	0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223,805		
전통시장	0	인별합계금액	223,805
대중교통	0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일반	106,550	106,55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일반	138,300	138,30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일반	244,850	244,85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인별합계금액		244,850	244,85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권영희	711006-****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칭그엽스즈	, 조리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16,380	3,595	34,630	17,315	-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34,630	17,315	17,315	
		935	44,670	29,500	28,565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